오산시의회 공고 제2019-24호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년 10월 8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복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○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자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, 기술자문의 시기,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외부전문가와 시의회 의원을 추가함(안 제3조 제3항제7호 및 제8호).
- 나.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.
- 다. 자문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 기준 금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, 설계변경 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와 증액되는 공사비가 기존 사업비의 20% 이상인 공사를 자문대상으로 추가함(안 제9조).

- 라. 기술자문을 설계가 완료된 후 받지 않도록 자문시기를 설계용역 기간 중 중간단계로 정함(안 제9조의2).
- 마. 복잡한 공정이나 특수 기술을 요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19년 10월 14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	례	명	: 오산시	기술자문	위원회	설치	및	운영	조례	일부개	정조려	∥안
□ 의경	견제결	출자										
\bigcirc ?	성명(1	단체	명) :									
\bigcirc 2	<u> </u>		소 :									
\bigcirc ?	던 화	- 번	호 :									

조레이니	찬 성 여 부		Ol		11] ¬	
조례안 내용	찬성	반대	의	견	비고	

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,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,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- 8.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 2명

제6조제2항 중 "직무를 대행한다"를 "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"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"30억"을 "20억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변경되는 공사"를 "변경되는 공사와 증액되는 공사비가기존 사업비의 20% 이상인 공사(단순 물량 증가 및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제외)"로 한다.

2. 총공사비가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자문시기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 대상 건설공사는 설계용역수행 기간 중 중간단계에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,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, 지 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, 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
<u><신 설></u>	8.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오 산시의회 의원 2명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 략)	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<u>직무를 대행한다</u> .	②
제9조(기술자문대상)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 대상 공사는 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 사로 한다.	제9조(기술자문대상)
1. 총공사비(토지매입비를 제외 한 공사비를 말한다) <u>30억</u> 이 상의 건설공사	1 <u>20억원</u> -

- 2. 총공사비가 30억미만의 건설 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- 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

<신 설>

제12조(심의의결) ① ~ 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2. 총공사비가 20억원 미만의건설공사 중 공사와 관련한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공사
- 3. -----

---- 변경되는 공사와 증액되는 공사비가 기존 사업비의 2 0% 이상인 공사(단순 물량 증가 및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제외)

제9조의2(자문시기)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기술자문 대상 건설공 사는 설계용역 수행 기간 중 중 간단계에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 다.

제12조(심의의결) ① ~ ② (현행 과 같음)

-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,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